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2. 22 선고 2022가단501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선인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0. 8.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0. 11. 18. 접수 제541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37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C은 보증한도를 82,5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9. 소외 회사에 18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C은 보증한도를 203,5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각 대출금(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3438호로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① 116,454,594원과 그 중 65,330,141원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82,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② 257,753,378원과 그 중 165,800,002원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3,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20. 8. 5. C에게 송달되었다. C이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20. 8. 20. 확정되었다.

라. C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8.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F, C이 있다.

마. 피고와 C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8.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0. 11. 18. 접수 제541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각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 C의 무자력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 당시 C에게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C이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C의 자력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의 채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 당시 C은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거나 또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C이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사망하기 전 수년간 C에게 총 530,000,000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사전증여를 하였다. 특히 망인은 2014. 5. 30.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C에게 총 111,500,000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총 26,340,000원을 돌려받아 그 차액 상당 85,16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위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망인의 C에 대한 사전증여로서 C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격 63,000,000원)가 있었고, 위 사전증여로 인한 C의 특별수익이 85,160,000원이므로 간주상속재산은 합계 148,160,000원(= 63,000,000원 + 85,160,000원)이고, C의 법정상속분액은 위 간주상속재산 중 C의 법정상속지분인 2/7에 해당하는 42,331,428원(= 148,160,000원 × 2/7, 원 미만 버림)이다. 이를 토대로 C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42,828,573원(= 법정상속분액 42,331,428원 - 특별수익 85,160,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 중 C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의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피고의 ① 주장’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위와 같은 C에 대한 망인의 사전증여 내지 C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C과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이하 ‘피고의 ②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총 111,500,000원이고, C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총 26,34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그 차액 상당 85,160,000원을 C에게 증여하였다거나, 나아가 위 차액 상당 금액이 망인이 장차 상속인으로 될 C에게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로 미리 준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C이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특별수익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C이 모자관계에 있는 점,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C의 특별수익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내용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8. 29.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0. 11. 18. 접수 제541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